

제250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서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6. 29.

임실군의회회장

1. 제정이유

-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7월 1일 시행을 앞둔 개정법 제2조제6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위임 하고 있어,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다. 지원의 신청(안 제4조)
- 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안 제5조)
-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바. 현장확인(안 제7조)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2015년 추경예산 199,000천원 반영
- 다. 협의 등
 - 1)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5.22.~2015.6.11.)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2) 비용추계서 : 붙임
 - 3) 관련법령 발체문 : 붙임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 가구, 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개별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급여신청 탈락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6.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1.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제4조(지원의 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그 친족 또는 복지이장 등은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임실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의
2. 긴급지원 연장 결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현장확인) 군수는 읍·면 공무원, 경찰·소방서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관계기관,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긴급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긴급지원법 제2조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200세대(예상)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5년 지원가구 위기사유별 유형파악

나. 추계 결과

- 긴급지원법 제2조 지자체장 인정사유 약 50%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원)

년도	대상세대	지원액	총예산액	증감액
2015	200	의료:300만원이내 생계:가구원수별 지원	199,000,000	

3. 재원조달방안

- 2015년도 추경 예산에 군비 199,000천원 예산편성

4.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서성석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계
세 출		199,000	159,000	159,000	159,000	676,00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사업 보조금		199,000	159,000	159,000	159,000	676,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99,000	159,000	159,000	159,000	676,000
	국비	159,200	127,200	127,200	127,200	540,800
	도비	15,920	12,720	12,720	12,720	54,080
	군비	23,880	19,080	19,080	19,080	81,12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전북임실025		
정책명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정희경	전화번호 063-640-208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6월 0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복지과)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p> <p>○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06월 04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복지과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63-640-2123)</p> <p>주민복지과장 귀하</p>			

□ 긴급복지법 제2조제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

: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